



#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16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거창군 고시 제1993-4호(1993.02.05.)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 2-216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9. 10. 15.

## 거 창 군 수

###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행 구간	최 초 결정일	비고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216호선)	마리	말흘	소로	2	216	164	8	1,294	마리면 말흘리 184-3 ~ 마리면 말흘리 23-1	거창 1993-4호 (1993. 2. 5.)	

### 2. 사업 시행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

###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 소로 2-2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읍·면	리			4,800	1,294					
1	마리	말흘	184 -3	도	1546	142		거창군			국
2	마리	말흘	184 -16	대	14	14		거창군			
3	마리	말흘	184 -13	대	41	41		거창군			
4	마리	말흘	184 -14	도	106	106		거창군			
5	마리	말흘	180 -22	도	9	9		거창군			국
6	마리	말흘	179 -5	도	204	204		거창군			
7	마리	말흘	179 -3	도	304	71		거창군			국
8	마리	말흘	19 -2	도	20	3		거창군			국
9	마리	말흘	19 -8	도	3	3		거창군			
10	마리	말흘	19 -1	도	20	20		양*애			
11	마리	말흘	18 -12	도	132	11		전*택			
12	마리	말흘	18 -19	도	95	33		이*승			
13	마리	말흘	19 -11	도	63	63		거창군			
14	마리	말흘	19 -12	도	28	24		거창군			
15	마리	말흘	19 -13	도	112	71		거창군			
16	마리	말흘	18 -20	도	77	66		거창군			국
17	마리	말흘	19 -14	도	156	108		거창군			
18	마리	말흘	18 -23	대	340	27		거창군			
19	마리	말흘	23 -3	대	771	37		거창군			
20	마리	말흘	23 - 1	도	378	234		거창군			국

#### 5.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16.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당동2길 22-15 등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40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송계로 558-9	2009-12-28	2019-10-16	송계사를 지나 고제면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233-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당동2길 22-15	2009-04-01	2019-10-16	금귀봉 봉수대의 수비꾼이 거처하던 당이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365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우랑길 531	2009-04-01	2019-10-16	웅양면 산포마을과 우랑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4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409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수재길 226-86	2009-04-01	2019-10-16	천재가 살았다는 전설에 따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우륵1길 101-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우륵1길 101-1	2009-12-28	2019-10-16	우륵길의 시점으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중유리 795-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상유길 13	2015-03-10	2019-10-16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하여 도로명 변경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33-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8길 109	2016-04-20	2019-10-16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위반 과태료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 거창군수

1. 제 목 :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위반 과태료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10.10. ~ 2019.10.25. (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면허종류	성명	면허번호	주 소	반송일	반송사유
굴착기	조**	부산 01-1988-0615 -01	거소지 : 경남 거제시 사등면 거제 대로 ****-*	2019.10.1.	이사감

4. 과태료 미납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건설담당(☎055-940-3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 공고 제2019 - 1254호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문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8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안내엽서를 일반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엽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0. 11. ~ 2019. 10. 26.(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 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법적근거 : 건설기계 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5. 공시송달 대상자

면허종류	면허번호	성 명	주 소	반송사유	반송일자
3톤미만지게차	경기 86-2002-00 **-**	이**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7길 39, ***동 ****호	원인불명	2019.9.24.
-	-	*철*	경남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2**	수취인불명	2019.10.4.
-	-	**주	경남 서창군 위천면 당산리 3**	수취인불명	2019.10.4.
-	-	*술*	경남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4**	수취인불명	2019.10.4.
-	-	**택	경남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3**	수취인불명	2019.10.4.
-	-	*신*	경남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3**	수취인불명	2019.10.4.
-	-	*용*	경남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1**	수취인불명	2019.10.4.

6.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거창군 건설과 건설담당(055)940-3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11.

거창군수

거창군 공고 제2019-1256호

##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3항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거창군수 인

1. 전자우편 주소 : geochang@korea.kr
2. 접수기간 : 2019. 11. 17.(일) ~ 2020. 2. 15.(토)

※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서만 할 수 있음.



##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거창군수

###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2. 개정 이유

-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2층 기획전시실을 나무 상상놀이터로 변경하여 설치운영할 예정이므로 시설물의 이용기준과 이용료 징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4조제1호에 기획전시실을 삭제하고 제2호에 나무상상놀이터 삽입  
- 체험시설: 초급·중급·고급체험장, 유아체험실, 영상관, 나무상상놀이터
- 조례제8조제1항 기획전시실을 삭제
- 조례[별표 2] 시설 이용료에 시설명, 이용기준, 이용료 규정

시설명	이용기준	이용료	비고
나무상상놀이터	1일3회/회당 90분 ※ 1회차(10:00~11:30) 2회차(13:30~15:00) 3회차(15:30~17:00)	6,000원	

4. 예고기간 : 2019. 10. 14. ~ 11. 02.

####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문화관광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 50132)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길2, 문화관광과(수승대담당)

- 전화번호 : 055) 940-8530

- FAX : 055) 940-8549

####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수승대담당 ☎(055)940-85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 -	제출연월일	2019. 10. .
		제 출 자	문화관광과장

## 1. 제안 이유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2층 기획전시실을 나무 상상놀이터로 변경하여 설치운영할 예정이므로 시설물의 이용기준 과 이용료 징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4조제1호에 기획전시실을 삭제하고 제2호에 나무상상놀이터 삽입

○ 체험 시설: 초급·중급·고급체험장, 유아체험실, 영상관, 나무상상놀이터

나. 조례제8조제1항 기획전시실을 삭제

다. 조례[별표 2] 시설 이용료에 시설명, 이용기준, 이용료 규정

시설명	이용기준	이용료	비고
나무상상놀이터	1일3회/회당 90분 ※ 1회차(10:00~11:30) 2회차(13:30~15:00) 3회차(15:30~17:00)	6,000원	

## 3. 참고 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목재의 지속이용가능한 법률 및 시행령」 제10조, 「거창군 목재 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 4. 기타 사항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관련부서 협의

-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규제심사

- 복지정책과(여성아동담당) : 성별영향분석평가

##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전시시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을 “(전시시설: 상설전시실)”로, 같은 조 제2호 “(체험시설: 초급·중급·고급체험장, 유아체험실, 영상관)”을 “(체험시설: 초급·중급·고급체험장, 유아체험실, 영상관, 나무상상놀이터)”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4조제1호에 따른 기획전시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를 “제4조제2호에 따른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시설) 체험장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u></p> <p>1. 전시시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p> <p>2. 체험시설: 초급·중급·고급체험장, 유아 체험실, 영상관</p> <p>3. 편의시설: 중정(쉼터),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p> <p>4. 그 밖의 시설 운영사무실, 야외놀이시설 등</p> <p>제8조(시설 이용 절차 및 이용료)</p> <p>① <u>제4조제1호에 따른 기획전시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시설 이용신청서를 군수(제13조에 따른 체험장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은 별표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1개월 이상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u>제4조(시설) 체험장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u></p> <p>1. 전시시설: 상설전시실,</p> <p>2. 체험시설: 초급·중급·고급체험장, 유아 체험실, 영상관, 나무상상놀이터</p> <p>3. 편의시설: 중정(쉼터),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p> <p>4. 그 밖의 시설 운영사무실, 야외놀이시설 등</p> <p>제8조(시설 이용 절차 및 이용료)</p> <p>① <u>제4조 제2호에 따른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시설 이용신청서를 군수(제13조에 따른 체험장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은 별표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1개월 이상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별표 2]

시설 이용료(제8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이용기준	이 용 료	비 고
체험시설	4시간	50,000원	
	1일	100,000원	
기획전시실 나무상상놀이터	1일	100,000원 6,000원	신설규정

1. 체험시설은 이용시간인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이용료 100,000원의 범위에서 시간당 10,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체험시설의 이용료 감경은 다음과 같다.
  - 가. 5일 이상 이용 시: 20퍼센트 감경
  - 나. 10일 이상 이용 시: 30퍼센트 감경
  - 다. 20일 이상 이용 시: 50퍼센트 감경
3. 나무상상놀이터의 이용료 감경은 다음과 같다.
  - 가. 지역주민, 어린이집 등 단체(20인 이상) :1,000원 감경 <신 설>
4. 체험시설은 목재관련 교육, 체험 및 문화행사,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용시간동안 일반 체험이용객은 그 이용을 제한한다.

## 관 계 법 령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 □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관리 및 운영) ①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재공고

거창군에서는 거창읍 중앙리, 대동리, 상림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지 및 나대지 등을 매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 거 창 군 수

### □ 매입대상지 선정 기준

- ① 주차환경이 열악한 거창읍 중앙·상림·대동리 등 2층 이하 저층 주택 및 나대지
- ② 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공고일 현재 건축한지 30년 (사용승인일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③ 폭 4m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진출입이 용이하여야 한다.
- ④ 대지면적이 60㎡이상 500㎡미만이어야 한다.
- ⑤ 대지경계 등 부동산 물권권리에 하자가 있는 필지는 제외한다.
- ⑥ 기타 주차장법 등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 □ 매입필지 가점 적용 기준

- ① 나대지나 폐가는 가점 적용한다(단, 건축 경과년도와 무관함)
- ② 면적(인접필지와 병행 신청할 경우 합필면적)이 크거나 공지 인접필지는 가점 적용하며, 기타 지역적인 균형배치 및 인근의 공영주차시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③ 건축물 건축 경과년도(잔존가치가 적은 건축물 등)에 따라 가점 적용한다.
- ④ 기타 현장조건(경사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등)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한다.



## □ 매입대상지 선정 및 계약 방법

- 매수를 신청한 필지에 대하여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필지를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심사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 후 계약한다.
- 매입필지 선정 시 매입계획 필지보다 약30%를 추가 선정하여 예비 매입필지로 지정 후 매매계약 포기자가 있을 경우 점수순 으로 이를 대체하여 계약한다.

## □ 기타사항

- 매매대상은 소재지상의 모든 물권을 포함한다.
-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 등기상 권리하자가 없어야 소유권을 이전하며, 소정의 행정절차를 거쳐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 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물건을 명도(거주자 퇴거 포함) 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교통과로 문의(전화 940-338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

□ 신청기간 : 2019. 10. 14. ~ 2019. 10. 25.(토, 일, 공휴일은 제외)

□ 신청장소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거창군청 3층)

□ 신청방법 : 신청 장소에 직접 신분증 지참 접수(우편, 인터넷접수 불가)

## □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1)
- 건물(나대지)사진(별지2)

【별지 1】

#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신청서

① 접수번호		② 접수 일자		③ 건물 주 거주여부 (거주, 비거주)
④ 물건소재지				⑤ 건축물소유자 (토지소유자와 다를 경우)
⑥ 토지소유자	성 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⑦ 도로폭	m	⑧ 구 조	철근콘크리트 ( ) 벽돌 ( ) 시멘트블럭 ( ) 기타:	
⑨ 대지면적	m <sup>2</sup>	⑩ 건물연면적	m <sup>2</sup> (지상 층/지하 층)	
⑪ 건물사용 승인 일	년 월 일	⑫ 임대가구수	가구	
* 첨부서류	<input type="checkbox"/> 건물(나대지)사진(별지2에 전경.근경 부착) <input type="checkbox"/> 신분증 지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거창군의 현지 실태조사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본 부지의 매입을 신청 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월    일</p>				
신청인 (소유자)	성 명	(인)		
신청인 (대리인 신청시)	성 명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소유자의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거창군수 귀하				

#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신청 위임장

- 물건 소재지 :
- 대 지 면 적 :                    m<sup>2</sup>
- 주 택 유 형 :
- 건축 연면적 :                    m<sup>2</sup>(지상    층/지하    층)
- 소유자 성명 :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상기 단독주택지(나대지)의 매입 신청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아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2019.       .

붙 임 : 토지(건물) 소유자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수임인

- 성            명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거창군수 귀하

【별지 2】

## 건물(나대지) 사진

전 경 (주변 건물보이게)

근 경

##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월 지급한도액을 정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4, 팩스 055-940-3179, 이메일 [leepw007@korea.kr](mailto:leepw007@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 개정이유

- 현재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월액여비 지급대상을 조례에 규정하는 등 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조문 정비(조례안 제2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 2)
  - 표준 조례안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을 “조례안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정비
-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규정 신설(조례안 제5조)
- 소관 중앙부처 변경에 따른 명칭 등 기타 미비점 보완(조례안 제6조 및 별표 1)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4, 팩스 055-940-3179, 이메일 [leepw007@korea.kr](mailto:leepw007@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를 “군수는”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조 이동한 제6조제3호 중“행정안전부과”를 “인사혁신처장과”로

제6조제7호 중“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p> <p>① (생략)</p> <p>② <u>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u></p> <p>③ <u>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u></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u>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u></p> <p>② (생략)</p> <p>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u>별표에 따라 지급한다.</u></p> <p>&lt;신 설 &gt;</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p> <p>① (생략)</p> <p>② <u>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되, 월지급한도액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u>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u>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u></p> <p>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p>

현행	개정안
<p>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1 ~ 2 (생략)</p> <p>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u>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u>"는 준용하지 아니한다</p> <p>4. ~ 6 (생략)</p> <p>7. 영 제29조제1항 중 "<u>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u>", 같은 조 제2항 중 "<u>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u>" 및 같은 조 제4항 중 "<u>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u>"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p> <p>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li> <li>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li> </ol> <p>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p> <p>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1 ~ 2 (생략)</p> <p>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u>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u>"는 준용하지 아니한다</p> <p>4. ~ 6 (생략)</p> <p>7. 영 제29조제1항 중 "<u>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u>", 같은 조 제2항 중 "<u>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u>" 및 같은 조 제4항 중 "<u>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u>"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단위: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 동 차 운 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비고 1.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5.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 관계법령

### □ 「공무원 여비규정」

제17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③ 대통령 특사(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거창군 규칙 제 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월 지급한도액)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2항의 월액여비 월 지급한도액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도로의 노선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공고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일원에 시행계획인 『농어촌도로 205호선(마리 월계) 확포장공사』에 대한 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을 위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이나 단체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18.

### 거창군수

#### 1. 사업개요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면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 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마리	리도	사동선	205	월계리435-1	월계리1023-6	937	월계리	8	6.5	도로 확장

2. 사업명 : 농어촌도로 205호선(마리월계) 확포장공사

3. 사업기간 : 2019. 11. ~ 2020. 12. 까지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명칭 : 거창군수(거창읍 중앙로 103)

5.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도로담당)
- 열람기간 : 2019. 10. 18. ~ 2019. 11. 1.(14일간)

6.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건설과 도로담당(☎055-940-3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대장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마리면 월계리	550	도	3,201	4		국(농수산부)			국
2	“	404-1	도	3,049	2,536		국(농수산부)			국
3	“	503-1	답	600	43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복원로 201	정종현외1인			
4	“	503	답	1,069	57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복원로 201	정종현외1인			
5	“	500-1	답	465	23	마리면 월계리 190	남 화 식			
6	“	500	답	3,103	114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998	정 임 순			
7	“	444	답	3,340	121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946	권 영 근			
8	“	443-1	답	3,514	131	거창군마리면 영승리 1219	조 병 주			
9	“	443	답	2,730	100	거창군마리면 영승중앙길 61	전 정 규			
10	“	405	구	8,226	3,818		국(농수산부)			국
11	“	442	답	1,752	64	서울 서대문구 연희1동 519-180	전 규 식			
12	“	441-1	답	1,988	73	거창읍 거열로 4길82,비동608호(공정 아파트)	윤 귀 언			
13	“	441	답	2,320	8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97 무원마을907동 801호	류 도 식			
14	“	440-1	답	1,553	5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56,111동 1602호	전 원 익			
15	“	440	답	1,316	44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646	정 정 임			
16	“	426-1	답	2,343	89	캐나다국 온타리오주 바한시7 놀스팍 로드212호	전 종 일			
17	“	426	답	1,118	81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648	강 옥 연			
18	“	415	답	2,084	96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247-4	심 은 섭			
19	“	413-1	도	677	25		국(농수산부)			국
20	“	413	답	3,063	17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46-5	전 영 록			
21	“	216-2	대	333	35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216-2	이 종 명			
22	“	435	답	1,474	115	경기 과천시 중앙동 37 주공아파트 117동 504호	정 효 근			
23	“	154	구	15,347	91		국(농수산부)			국
24	“	435-1	답	1,570	245	거창군 마리면 영승2길 17	박 명 순			
25	“	437	답	2,102	237	거창읍 동동 746-12	전 병 준			
26	“	437-1	답	2,605	295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1213	정선전씨 군수공파종중			
27	“	438	답	498	59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054	전 성 대			
28	“	438-1	답	2,871	335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646	유 병 렬			
29	“	439	답	2,473	303		전 경 옥			
30	“	439-1	답	1,655	197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전병준 외2인			

						1041						
31	“	399	답	2,083	265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069	전 태 익					
32	“	399-1	답	2,194	250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북동731성동마을엘지빌리지6차 612-1902	이 임 순					
33	“	1313	도	251	198		국(건설부)					국
34	“	1278-44	구	59,801	2,594		국(농림축산식품부)					국
35	“	582-4	답	1,064	66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266,103동2303호	전 병 연					
36	“	582-1	도	126	126		전병식외2인					
37	“	582-2	답	1,045	507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076	전 정 익					
38	“	619-3	도	17	17		정 구 선					
39	“	1314	도	331	316		국(건설부)					국
40	“	640-1	도	23	23		전 찬 식					
41	“	640-3	답	2,066	47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당로 50(신당동)	신 덕 재					
42	“	640-2	도	20	20		전 찬 식					
43	“	639-1	도	3	3		전 상 순					
44	“	639-2	답	3,369	481		유 태 식					
45	“	638	전	1,874	619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266,103동2303호	전 병 연					
46	“	624-1	도	36	36		거 창 군					국
47	“	637	답	2,433	31	마리면 월계리 1076	추원 제종중					
48	“	624-2	답	3,488	1,681	거창읍 소만2길 62,107동 602호	최 영 목					
49	“	626-1	답	565	8	거창군 마리면 학동1길 165	손 복 모					
50	“	664	도	1,949	99		국(농림수산부)					국
51	“	674	구	1,241	31		국(농림수산부)					국
52	“	625-1	답	1,007	540	거창군 마리면 학동1길 165	손 복 모					
53	“	625-2	목	1,906	11	거창군 마리면 학동1길 165	손 복 모					
54	“	1021-3	답	238	79	거창군 마리면 학동1길 165	손 복 모					
55	“	1021-2	도	225	225		거 창 군					국
56	“	1022-6	대	579	18	거창군 마리면 학동1길 165	손 복 모					
57	“	1022-4	도	618	566		거 창 군					국
58	“	1022-5	답	1,540	67	마리면 월계리 1050	유 갑 준					
59	“	1019	전	694	9	거창읍 강남로 266,103동2303호	전 병 연					
60	“	1327	구	1,597	3		국(농수산부)					국
61	“	400	답	1,205	89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북동731성동마을엘지빌리지6차 612-1902	이 임 순					
62	“	400-1	답	579	52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023-6	전 철 문					
63	“	404	구	66	66		국(농수산부)					국
64	“	401	답	1,902	259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023-6	전 철 문					

65	“	402	답	1,429	65	거창읍 강남로 266,103동2303호	전 병 연			
66	“	583-2	도	87	87		전 선 이			
67	“	583-3	도	20	20		전 선 이			
68	“	403	답	1,950	13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1184-17	정 기 석			
69	“	620-1	답	2,334	121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064	전 병 택			
70	“	620-2	도	56	51		거 창 군			국
71	“	621-2	도	202	183		거 창 군			국
72	“	614-6	답	2,420	291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064	전 병 택			
73	“	614-5	답	2,602	155	함양군 서하면 함양남서로 3938-1	최 이 금			
74	“	1315	도	739	497		국(건설부)			국
75	“	623-2	도	152	130		거 창 군			국
76	“	608	도	614	46		국(농림수산부)			국
77	“	613-2	답	1,812	57	부산 북구 감전동 121	전병윤			
78	“	613-6	답	481	30	마리면 월계리 1055	이 기 준			
79	“	613-1	대	613	91	마리면 월계리 1055	이 기 준			
80	“	1022-1	답	612	350	마리면 월계리 1026	사동마을회			
81	“	1022-2	도	195	84		거 창 군			국
82	“	1023-6	대	656	88	마리면 월계리 1023-6	전 칠 문			
83	“	1023-9	도	8	7	마리면 월계리 1023-6	전 칠 문			
	합 계			191,556	21,673					

## 거창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수영강사) 채용시험 공고

거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수영강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1.

거창군수 (직인생략)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신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장소	업무내용	비고
기간제근로자	수영강사	1명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거창국민체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영 강습</li> <li>◦수영장 안전관리</li> <li>◦강습프로그램 발굴 등</li> </ul>	

### 2.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 9개월
  - ※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해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 급 여
  - 기본급 : 일급 76,800원×근무일수
  - 각종 수당 : 주차, 월차, 연차, 휴일근로수당, 강사수당, 안전관리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외부특강 수당 등
  - ※ 연봉 : 44,000천원 정도(외부 특강 수업 별도)

## ○ 근무내용

근무 요일	근무 내용	근무 시간	비 고
화요일 ~ 금요일	수영강습 (안전근무 포함)	- 오전조 06:00 ~ 15:00 - 오후조 13:00 ~ 22:00	- 4개월마다 근무조 변경 근무
토요일 ~ 일요일	당직근무 (안전근무 포함)	"	- 토,일 근무 시 근무조 편성 후 순번대로 근무 실시 (월 4회 정도 근무)

※ 매주 월요일 휴관(휴무)

○ 후생복지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장소 : 거창국민체육센터 수영장

###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4.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기준

1) 다음의 자격증 소지자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과 수상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자

-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수상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수상구조사 또는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
  - 수상구조사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수상인명구조요원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수상레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자

<해양경찰청장 지정 수상레저 기관(단체) 현황>

대한적십자사	(재)한국YMCA전국연맹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사)대한인명구조협회	(사)한국해양구조협회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사)한국구조연합회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대한안전연합
(사)수상인명구조단		

- 2)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3) 성      별 : 남녀 구분 없음(단, 남자의 경우 최종 면접 시험일 기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 4) 거 주 지 : 제한 없음

나.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1)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1조(결격사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응시자 우대사항

- 공공기관 수영강사 근무 경력자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5. 응시원서 교부(접수) 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공 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9. 10. 11. ~ 10. 18.	2019. 10. 17. ~ 10. 18.	2019. 10. 21(월)	2019. 10. 24.(목) 14:00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2019. 10. 25(금)



가. 접수처 : 거창국민체육센터 1층 안내데스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09:00 ~ 18:00) /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다. 합격자 발표 및 근무개시일

○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붙임 참조

- 반명함판 사진 2매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 4.5cm)】 부착

나. 자기소개서 ----- 1부

다.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A4용지 소정 양식)----- 1부

라.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 수영강사 경력이 있는 자는 필히 제출 요함. 미제출 시 수영강사 경력 불인정함.

- 근무기간, 부서,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기관 관인 또는 직인이 있어야 함.

마. 자격증 발급 확인서 ----- 각1부

- 필수 제출 :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인명구조관련 자격증

- 선택 제출 : 기타 자격증

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최종 합격자에 한함) ----- 1통

마.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사.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이력사항 기재, 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채용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받아 제출한 서류에 한해 인정함.

## 7. 기타사항

-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국민체육센터담당(☎055 - 940 - 87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 시 원 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접수번호			응시분야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				
	(한자)							
주소				전화 :				
				HP :				
학 력	부터	까지	학 교 명			전공학과	학위명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자 격 면 허	취득일자	종 별	병역	군별	계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주 요 경 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 당 업 무		
귀 군의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7월 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span>제 출 인</span> <span>(인)</span> </div>								
거 창 군 수 귀하								

응 시 표	성 명	한글			※응시번호			사 진 (2) 위와 동일사진  (3cm×4cm)
		한자			응시분야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주민등록번호				-			
2019년 월 일 <b>거 창 군 수</b>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원서 : 응시원서 기재사항은 **자필**로 작성 제출
  - ② 응시분야 :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기재
  - ③ 주 소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④ 학 력 : 대학교 이하 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재학·수료·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 기재
  - ⑤ 성 명 : 정자로 기재
  - ⑥ 주민등록번호 : 정자로 기재
- ※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이 력 서

사 진  
(3cm x 4cm)

성명	한 글		생 년 월 일	년 월 일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집 : (            )	휴대전화 :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분 야					
	~	고등학교(졸·중퇴)							
	~	대 학 교(졸·중퇴)		전공					
	~	대 학 원(졸·중퇴)		전공					
경 험	기 간	근 무 처	직 위	업 무 내 용					
	~								
	~								
	~								
	~								
자 격 및 면 허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명		시 행 처					
	년 월 일								
병 역	복 무 기 간	군 별	계 급	병 과	미 필 또는 면 제 사유				
	~								
신 장	<small>cm</small>	체 중	<small>kg</small>	취 미		특 기		종 교	
가 족 사 황	관 계	성 명	연 령	학 령	직 업	근 무 처	직 위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9 년    월    일

성 명 :                          ㉠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연령)	채용등급	채용분야
	. . ( 세)	기간제근로자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2019. . .

작성자 : (서명·인)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성장과정, 좌우명, 학교생활,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 및 실적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
- 또한, 응모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 향후계획, 발전방안 등을 기술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반드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 3.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